

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

◆ 일 시 : 2000.10.11(수) 14:00~18:00

◆ 장 소 :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(지하1층)

◆ 참석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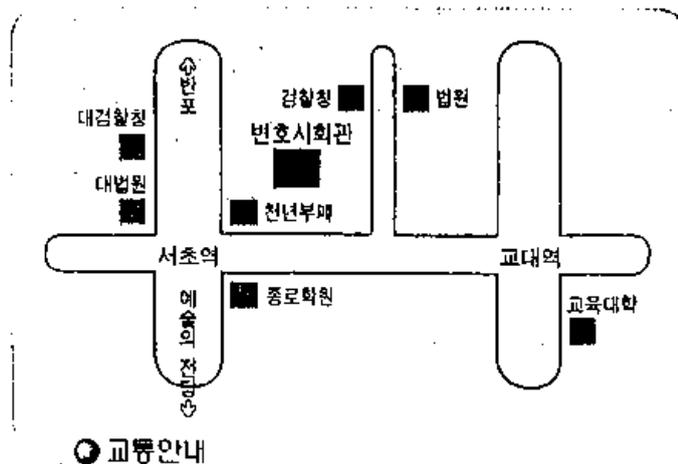
○ 사회 : 양승규 교수(카톨릭대교수 ·
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)

○ 발표 및 토론자

- 김주영(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)
- 박 준(운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)
- 서헌제(중앙대 법학과 교수)
- 이경훈(삼성전자 법무실 상무 · 변호사)
- 임홍근(성균관대 법학과 교수)
- 정광선(중앙대 경영학과 교수)

금융정책국

공청회장 약도



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

企業支配構造改善 用役報告書 5大 爭點 및 現行 商法規定 (參考資料)

理事·理事會制度改善

I. 理事의 情報接近權의 強化

▶ 보고서의 내용 ◀

- 이사에게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영업기록과 회계장부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

※ 보충설명(법무부)

-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를 감독하고, 이사회의 구성원인 각 이사(특히 사외이사)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것임
- 따라서, 이사가 다른 이사 및 그 회사의 피용자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임

▶ 현행규정 ◀

- 현행법상, 이에 관련된 규정 없음. 다만, 감사의 경우.
 - 監事는 언제든지 理事에 대하여 營業에 관한 보고를 要求하거나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다.(상법 제412조 ②항)
 - 母會社의 監事는 그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子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, 子會社가 지

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子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다.(상법 제412조의4 ①항, ②항)

II. 理事會 承認을 요하는 事項에 대한 明示的 規定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 승인 필요 경영진에게 위임 불가 19개 항목
 - (i) 상장회사의 경우 중요한 영업전략을 규정한 회사 사업계획의 채택 및 그러한 계획의 정기적인 검토·변경
 - (ii) 상장회사의 경우 연간 예산의 채택 및 그러한 예산의 정기적인 검토·변경
 - (iii) 정기·임시 주주총회의 소집
 - (iv) 정기·임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결정
 - (v)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관련 기준일 설정 및 주주들에게 배포될 자료의 승인을 포함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의 결정
 - (vi) 발행가격·전환가격 및 주요 발행조건을 포함하여, 주식, 사채 기타 증권의 발행 및 자금조달 금액이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의 5% 이상인 경우 그러한 자금조달의 승인
 - (vii) 회사가 발행한 주식, 사채 기타 증권의 취득 및 상환
 - (viii) 상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, 주식 및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격 및 이해관계자 거래의 공정성 결정
 - (ix) 주주들에게 이사 보수의 금액 및 종류의 제안
 - (x) 주주들에게 배당금액의 제안

- (xi)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고위 임원의 임면 및 고위 임원이 이사가 아닌 경우 그 고용 및 보수의 조건 결정
- (xii) 주주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추천 및 선임조건의 결정
- (xiii) 회사의 연차 사업보고서·재무제표의 승인 및 주주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러한 서류들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행위
- (xiv) 이사회 및 위원회 내규의 채택
- (xv) 지점 및 자회사의 설립
- (xvi) 취득, 투자, 처분, 임차 또는 담보설정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의 5% 이상이 되는 거래의 승인;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에 규정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승인; 상법 또는 회사 정관에 의하여 주주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
- (xvii) 상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, 이해관계자 거래의 승인 및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승인을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
- (xviii)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
- (xix)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사항을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

▶ 현행규정 ◀

- 會社의 業務執行,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·移轉 또는 廢止는 理事會의 決議로 한다.(상법 제393조 ①항)
- 理事會는 (1) 株主總會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提案, (2) 代表理事의 選任 및 解任, (3) 定款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權限을 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.(상법 제393조의2 ②항)

Ⅲ. 理事등의 秘密維持義務 明示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이사, 주주, 기타관계자들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

▶ 현행규정 ◀

- 직접규정 없음.
 - 비밀유지 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, 이사의 충실의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학계의 견해가 있음

Ⅳ. 上場會社 社外理事 推薦節次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상장 대기업(자산 2조원이상)의 경우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사외이사 1/2이상)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규정 지지
 - 점진적으로 자산기준 하향 고려

▶ 현행규정 ◀

- 證券會社는 社外理事候補를 추천하기 위하여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. 이 경우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社外理事가 總 委員의 2分の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(증권거래법 제54조의5 ②항)
 - 第54條의5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券上場法人(자산총액 2조원 이상)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.(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③항, 승 제84조의23)

V. 株主에 대한 理事의 忠實義務 新設

▶ 보고서 내용 ◀

이사들에게 모든 주주를 공정·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부여

▶ 현행규정 ◀

-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(상법 제382조의3)
- 會社와 理事의 關係는 委任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(상법 제382조 ②항)
 - 受任人은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委任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.(민법 제681조)

少數株主權의 強化

I. 檢査人選任請求權의 單獨株主權化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'검사인 선임 요청권' 관련 단독주주권 인정

▶ 현행규정 ◀

- 會社의 業務執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 있음을 疑心할 事由가 있을 때에는 發行株式總數의 3%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의 業務와 財産

상태를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法院에 檢査人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.(상법 제467조 ①항)

- 6月전부터 계속하여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3%이상(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1.5% 이상)에 해당하는 株式을 보유한 者는 商法 第467條에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.(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④항)

II. 會計帳簿閱覽權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상장회사의 경우,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계된 회사기록의 접근에 필요한 주식보유비율 하향 조정
- 주주가 검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회사 영업기록 포함 명시

[현행규정]

- 3%이상 보유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치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(상법 제466조)
- 6月전부터 계속하여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%이상(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0.5% 이상)에 해당하는 株式을 보유한 者는 商法 第466條에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.(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③항)

III. 株主代表訴訟의 改善

▶ 보고서의 내용 ◀

-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그 소송비용 (변호사 수임료 포함)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법제405조제1항을 개정하여야 함
- 법원이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에게 승소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있음

▶ 현행규정 ◀

□ 商法第403條(株主의 代表訴訟)

-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(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⑥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·인락, 화해를 할 수 없다.
- ⑦ 제176조제3항,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

- ※ 제176조제3항, 제4항 : 담보제공명령(청구인의 악의 소명)
- 제186조 :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

□ 商法第406條(提訴株主의 權利義務)

-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이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□ 證券去來法第191條의13

- ①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(상법 제324조, 제415조, 제424조에 2, 제467조의 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수 있다.
- ③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(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)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(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.

- ④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0(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)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⑤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(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)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.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.
- ⑥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(상법 제324조, 제415조, 제424조의 2, 제467조의 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.

□ 民事訴訟등印紙法第2條第4項

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소가는 1천만 100원으로 본다.

(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5조① 주주의 대표소송,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.)

집중투표제 의무화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규정 삭제
-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
 - 상장회사 이사는 매년 선임
 - 주주 추천,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이사를 해임할 경우, 모든 이사해임 후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

▶ 현행규정 ◀

- 2인이상의 理事의 選任을 目的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3%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理事를 選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.(상법 제382조의2 ①항)
- 理事의 任期는 3年을 超過하지 못한다.(상법 제383조 ②항)
- 理事는 언제든지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.(상법 제385조 ①항)

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상장회사의 경우, 주주 신주인수권을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

-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

- *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 발행주식 5%이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*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승인 받은 경우
 - * 시가이상으로 공모 발행시
- 보통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증권 발행도 주주가 우선적 인수권을 갖도록 조치

▶ 현행규정 ◀

- 株主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서 新株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.(상법 제418조 ①항)
-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公募增資方式(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)에 의하여 新株를 발행할 수 있다.(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①, 승 제84조의5)
- 會社가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의 事項(株主 외의 者에게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轉換社債의 額 등)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.(상법 제513조 ②항)
- 株主 외의 者에 대하여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轉換社債의 額,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株式의 內容과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에 관하여 定款에 規定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.(상법 제513조 ③항)
- 會社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의 事項(株主

외의 者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등)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.(상법 제516조 ②항)

- 株主 외의 者에 대하여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, 新株引受權의 內容과 新株引受權을 행사할 수 있는 期間에 관하여 定款에 規定이 없으면 主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.(상법 제513조 ③항)
-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轉換社債, 新株引受權附社債와 다른 종류의 社債로 ...(중략) ... 株式 기타 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부여된 社債...(중략) ... 등을 발행하는 경우 社債의 內容과 발행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(증권거래법 제191조의4, 승 제84조의12, 제84조의13)

利害關係者 去來에 대한 監督

▶ 보고서 내용 ◀

- 상장회사 또는 자회사가 사소하지 않은(최소기준을 초과하는) 이해관계자 거래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 필요
- 상장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승인
 - 정상적 거래조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, 사외이사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거나,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 승인
- 이해관계자 거래의 심의 및 의결시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은 별도로 회의 개최

-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에게 상임이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에 대한 답변요구권 부여
- 상장회사 또는 자회사의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(지분적 이익이 매출액 또는 자산의 일정비율(5%정도) 이상)시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승인 및 이해관계 없는 주주 승인 필요
- 비상장사의 경우,
 - 사소하지 않은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 과반수의 승인 필요
 -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 과반수의 승인 필요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승인

구 분		승 인 내 용
상장회사 또는 자 회사	정상적 조건에 따라 시 가로 이루어진다고 판단	·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승인 (1번, 2번)
	판단 곤란	· 불승인 또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 승 인(2번)
	지분적 이익이 매출액의 일정비율(5%정도) 초과	·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승인(4번) · 이해관계 없는 주주 승인(4번)
비상장회사	사소하지 아니한 거래	· 이해관계 없는 이사 승인(5번)
	대규모 거래	· 이해관계 없는 주주 승인(5번)

- 주 1. 승인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미
 2. 비상장사 대규모 거래의 경우, 주주가 소수(10명 이하)이면 제외

○ 이해관계자 거래는 다음과 같음

①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

* 기업집단 :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, 공정위 지정 기
 업집단

② 회사 또는 자회사나 계열사 거래로 당해회사 이사, 임원, 주요주주, 특수관계인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

* 주요주주 : 특수관계인과 함께 지분 20%이상 보유 주주

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이해관계자 거래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자 거래

▶ 현행규정 ◀

○ 大規模企業集團중 内部去來公示對象會社は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大規模内部去來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.(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 ①항, 승 제17조의8)

- 대상회사 : 자산총액 순위 1~10위까지의 기업집단

- 규 모 : 당해회사 자본금 1/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

- 거래행위 : 資金, 有價證券, 資産 제공 또는 去來 행위